

# SIRIM (말레이시아제품인증)

## 1. 개요

<p>■ 정의</p>	<p>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강제/임의인증제도이다.</li> <li>- COA는 에너지 위원회(ST)에 말레이시아 수입사업자(Trader)로 등록된 회사/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COA를 받은 후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나 BTS(Batch Testing Scheme)에 의해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다.</li> <li>-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는 제품인증 절차로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자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지사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li> <li>- 말레이시아 내에 대리인이 있는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 /Consignment Scheme)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SIRIM의 라벨(제품에 안전인증 취득을 나타내는 라벨)을 구입할 수 있다.</li> </ul>
<p>■ 주관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RIM QAS : SIRIM Berhad의 자회사로 SIRIM Berhad가 수행하던 각종 인증 및 시험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PCS/BTS 등 진행</li> <li>- ST : Suruhanjaya Tenaga (Energy Commission)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SIRIM 인증취득 시 사전에 ST를 통해 COA를 발급 받아야 한다.</li> </ul>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 건축, 화학, 기계자동화, 통신 및 멀티미디어 등</li> <li>- 전기전자 강제인증대상 품목 : 플러그(15A 이하), 조광스위치, 소켓아웃렛(15A 이하), 형광등소켓, 실링로즈 등</li> </ul>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li> </ul>
<p>■ 인증마크</p>	 <p>The image shows two certification marks. On the left is the SIRIM logo, which consists of three stylized figures in blue and yellow, with 'SIRIM' written below them and 'MS' in a diamond shape above. Below the figures is the number 'MS0123456789'. On the right is the MS logo, which is a red diamond with 'MS' inside, and below it, the text 'SIRIM CERTIFIED TO YY : XXXX' and 'CERTIFICATION NO:XXXXXXXX'.</p>

■ 적용규격	- MS (Malaysian Standards: 말레이시아국가규격)
■ 기타	-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에 제품관련 승인서(COA : Certificate of Approval ; 일종의 통관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2. 배경 및 개관

SIRIM Berhad는 1975년 9월 16일 SIM(Standard Institution of Malaysia)과 NISIR(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가 합병되어 탄생한 기관이었으나 1996년 9월 1일부로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의 말레이시아 정부 출자기관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다.

1996년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는 SIRIM Berhad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이후에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는 SIRIM Berhad가 이전에 수행했던 인증, 심사, 시험업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한편 Standards Malaysia는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 산하의 기관으로서 SIRIM이 SIRIM Berhad로 재탄생할 즈음 1996년 8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Standards Malaysia는 예전에 SIRIM이 수행했던 표준화 업무를 인계받는 한편 인가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SIRIM 제품인증은, 제조업체(또는 수입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이 말레이시아나 국제규격의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3자인 SIRIM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증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 획득은 자율이나 정부에서 규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업체는 인증받은 제품에 “MS”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 대부분의 규제품목에는 제품에 SIRIM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제품이 특정규격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

에 제품관련 승인서(COA : Certificate of Approval ; 일종의 통관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COA는 에너지 위원회(ST)에 말레이시아에 수입사업자(Trader)로 등록된 회사/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COA를 받은 후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나 BTS(Batch Testing Scheme)를 통해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다.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는 제품인증 절차로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자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지사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내에 대리인이 있는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Consignment Scheme)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SIRIM의 라벨(제품에 안전인증 취득을 나타내는 라벨)을 구입할 수 있다.

규제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ST에 Letter of Release를 신청하여 수입품에 대한 세관통과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면 된다.

### 3. 전기제품 강제인증 대상품목

- (1) 플러그탑/플러그-15A 이하 (PLUG TOP/PLUG (15A AND BELOW))
- (2) 조광스위치 (SWITCH AND DIMMER)
- (3) 소켓아웃렛-15A 이하 (SOCKET OUTLET (15A AND BELOW))
- (4) 형광등 소켓 (FLUORESCENT LAMP HOLDER/ STARTER HOLDER)
- (5) 실링로즈 (CEILING ROSE)
- (6) 삼입베이스 및 멀티어댑터 (BAYONET CAP AND MULTIWAYS ADAPTOR)
- (7) 개별수입의 경우 튜브를 제외한 형광등 소켓 (FLUORESCENT LAMP FITTING EXCLUDING TUBES IF IMPORTED SEPARATELY)
- (8) 형광등 커패시터 (CAPACITOR FOR FLUORESCENT LAMP)
- (9) 형광등 밸러스트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 (10) AC로 된 접지누전 회로차단기 및 소형 회로차단기를 포함한 회로차단기 (CIRCUIT BREAKER INCLUDING AC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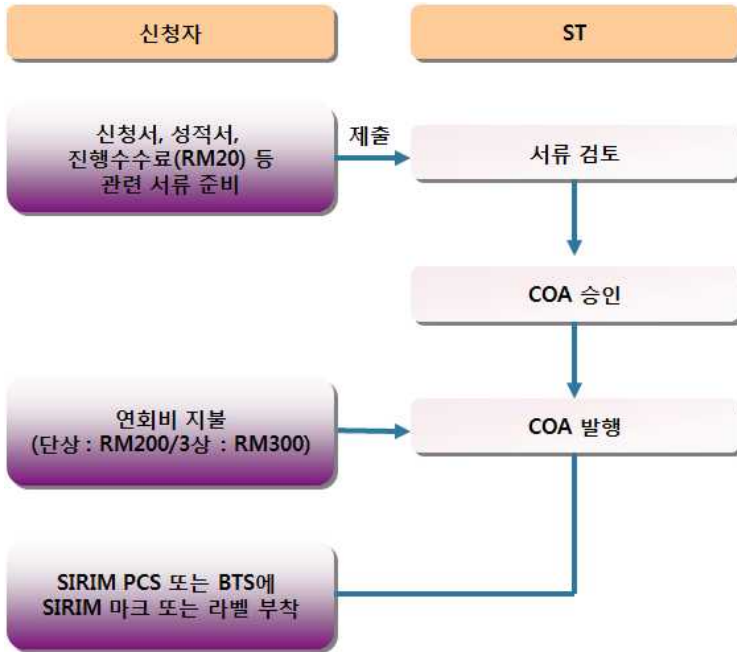
BREAKER AND MINIATURE CIRCUIT BREAKER)

- (11) 개별수입의 경우 전기 급탕장치 (WATER HEATER INCLUDING HEATING ELEMENTS IF IMPORTED SEPARATELY)
- (12) 헤어드라이기 (HAND OPERATED HAIR DRYER/HAIRCARE)
- (13) 터치 방식의 테이블램프 (TABLE LAMPS HAVING ACCESSIBLE METAL PART)
- (14) 개별수입의 경우 전기주전자 (KETTLE INCLUDING HEATING ELEMENTS IF IMPORTED SEPARATELY)
- (15) 다리미 (IRON)
- (16) 전기면도기 (SHAVER)
- (17) 믹서기 [FOOD MIXER/BLENDER (KITCHEN MACHINE)]
- (18) 온수기 (IMMERSION WATER HEATER)
- (19) HI-FI 세트 (HI-FIDELITY SET)
- (20) 매트 모기향 (MOSQUITO MATT VAPORISER)
- (21) 토스터기 / 오븐 [TOASTER / OVEN (COOKING APPLIANCE)]
- (22) 팬 (FAN)
- (23) 텔레비전 (TELEVISION)
- (24)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
- (25) 비디오 플레이어 (VIDEO PLAYER)
- (26) 세탁기 (WASHING MACHINE)
- (27) 냉장고 (REFRIGERATOR)
- (28) 밥솥 (RICE COOKER)
- (29) 크리스마스 전등 (CHRISTMAS LIGHT)
- (30) 말레이시아산 (휴대용)전동기기 [DOMESTIC POWER TOOLS (PORTABLE TYPE)]
- (31) 0.5 ~ 35mm<sup>2</sup>의 전선 / 케이블 / 코드 [WIRE / CABLE / CORD (non-armoured)  
0.5mm<sup>2</sup> to 35mm<sup>2</sup>]

#### 4. 관련법규

- 말레이시아 전기공급 법령(1990)(Act 447)
- 전기규정(1994)

## 5.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COA 신규 신청절차



### 가. 온라인 신청등록

ST에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는 "ePermit System"(<http://epermit.dagangnet.com>)을 통해서 신청되어야 한다. 이때 **말레이시아에 수입사업자(Trader)로 등록된 회사/개인**만이 온라인 상으로 ST COA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SIRIM QAS International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COA 신청서만 수용한다. ID신청시 2영업일 내로 받을 수 있다. COA는 온라인과 하드카피로 발행된다.

### 나. 신청절차(제출서류)

신청자는 "Form ST (PE) 3 (Pind. 2008)"을 작성하고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형식시험성적서
- (2) 매뉴얼
- (3) 기술사양서 및 카탈로그
- (4) (필요시)제품샘플
- (5) 비용 : RM20.00

다. 형식시험성적서

(1) 에너지위원회가 인정한 형식시험성적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 ① SIRIM Berhad(SIRIM)나 Standards Malaysia의 SAMM(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of Malaysia)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 ② IECEE CB Scheme 하의 시험소로서 CB성적서는 CB인증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③ APLAC와 MRA를 맺은 인정기관이 인가한 시험소로서 형식시험성적서는 Standards Malaysia의 적합성레터(Letter of Conformity)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④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 ASEAN Sectoral 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

(2) 위의 ②, ③ 및 ④에 대해서는 시험이 말레이시아의 국가 규격차이점(National Deviation)을 고려해야 하며, 성적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IRIM이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단상(Single Phase)에서 230V(+10%, -6%)/240V 또는 3상(Three Phase)에서 400V(+10%, -6%)/415V 전압을 시험하거나 50Hz 주파수를 시험하는 것이 그것이다.

(3) 형식시험성적서는 말레이시아어나 영어로 발행되어야 한다.

라. COA 연회비

단상(230V)의 경우 RM200, 3상(400V)의 경우 RM300의 연회비가 발생되며, COA가 승인되는 즉시 지불해야 한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마. 현지 제조품에 대한 조건

현지 제조품으로 승인된 전기제품은 SIRIM의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로 분류된다. 전기제품은 SIRIM이 발행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구매신청서식은 “Form PCS/FOR12-1”이다.

바. 수입품에 대한 조건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이 승인된 전기제품은 COA가 유효하다는 가정 아래 모든 제품군에 대해 SIRIM의 신청서 PP7을 사용하여 배송물 시험(Consignment Test)을 실시하여 기술기

준에 적합한지를 살핀다. 그 후 적합성이 판명되면 SIRIM 라벨을 부착하면 되는데, 라벨신청은 "Form PP8"로 하면 된다.

## 6. 전기전자기기의 제조, 수입, 전시 및 홍보를 위한 COA 갱신절차

가. COA 갱신신청을 위한 서류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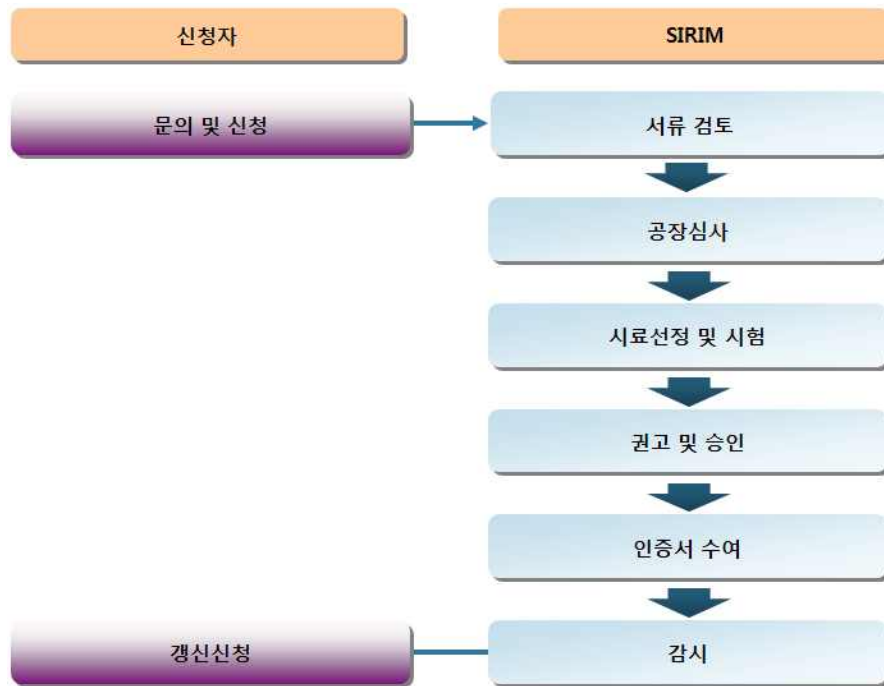
- COA 사본
- 연간 갱신비용 : 단상(230V) 시 RM100, 3상(400V) 시 RM200
- 에너지 위원회(ST)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최신 시험성적서로서 시험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면 안 되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수입품에 대한 COA 갱신신청 시 : 수입시 "SIRIM PP8" 문서에 있던 SIRIM 라벨 구입증명서, SIRIM이 발급한 탁송물(Consignment) 성적서 사본 또는 송장
- 현지 제조품의 COA 갱신신청 시 : "PCS/FOR12-1" 문서에 있던 SIRIM 라벨 구입증명서 또는 SIRIM이 발급한 유효한 제품인증라이선스 사본

나. 전기제품의 제조, 수입, 전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COA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전기규정(1994)에 따라 COA가 만료되기 전 늦어도 14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다. "가" 항에 나온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만료일 14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COA 갱신은 승인될 것이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COA가 만료되기 전 14일이 채 안 남았을 경우 갱신신청은 거부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신규신청절차에 따라 새로운 COA를 신청해야 한다.

## 7.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신청절차



### 가. 문의단계

신청자는 제품인증질의서(PCS/FOR/01-1)를 작성하여 SIRIM에 제출한다. SIRIM은 규격, 시험 및 평가에 대하여 인증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견적서를 발행한다.

### 나. 신청단계

(1) PCS 신청은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자,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지사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2) 제출서류

- 신청서(PCS/FOR/01-2)
- 관련 당국이 발행한 승인선언문(Declaration for Approval)(PCS/FOR/01-3)
- 트레이드마크 등록/브랜드명에 대한 승인선언문(PCS/FOR/01-3.1)
- 제품정보, 수수료, (가능한 경우)성적서



다. 서류검토

SIRIM이 규격/제품설계 등을 검토한다.

라. 공장심사

SIRIM이 QC Plan의 적절성, 시험장비의 적절성, 교정, 기록유지시스템 등을 검사한다. 공장심사 기본비용은 RM3,000 ~ 5,000이며, 여기에는 진행비, 서류검토비, 조사체크리스트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추가비용은 SIRIM에 문의해야 한다.

마. 시료선정 및 시험

신청시 제출한 성적서와는 별도로 시료가 랜덤으로 선정되어 인가된 시험소로 보내져서 시험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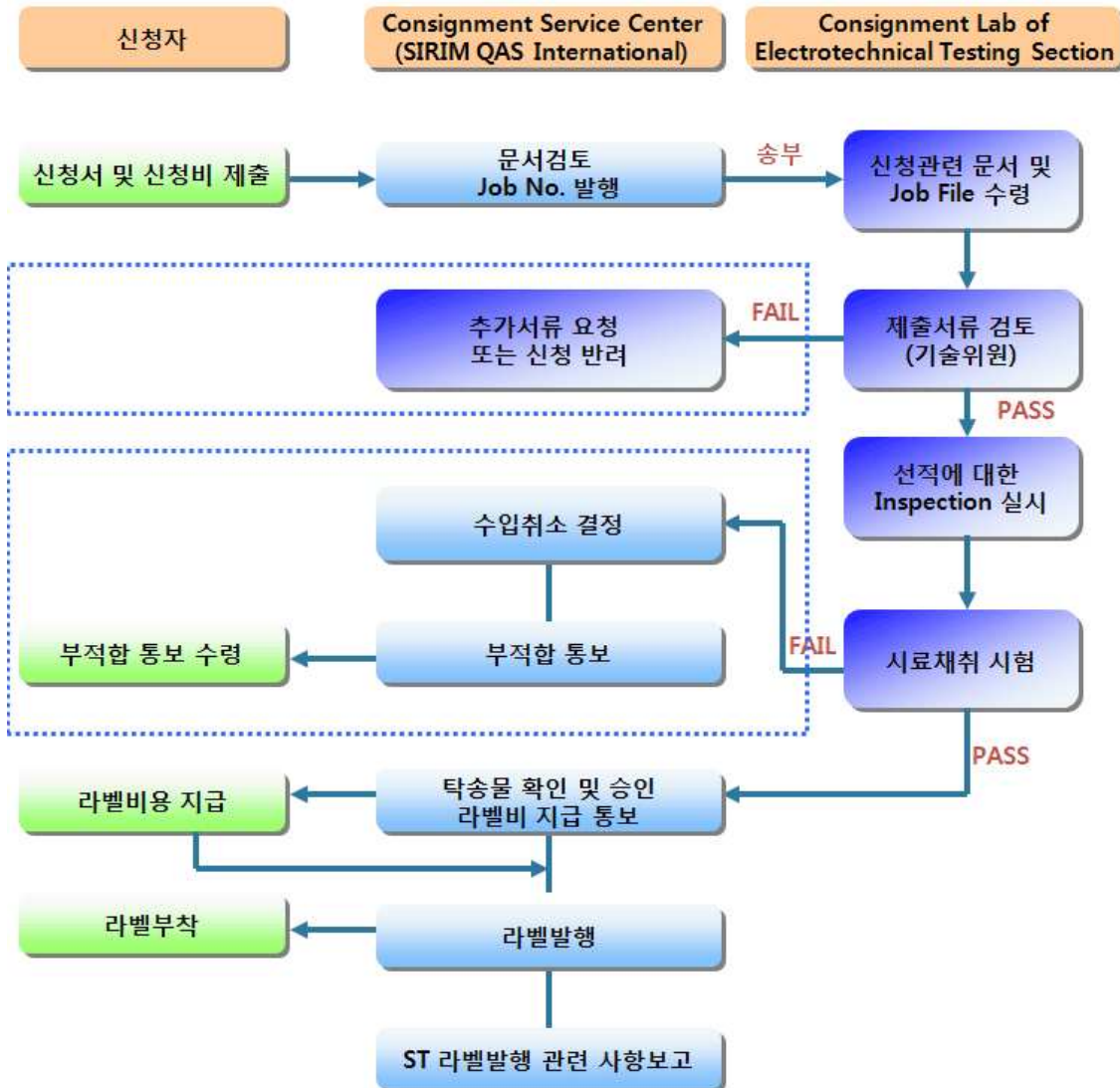
바. 권고 및 승인

- (1) 인증보고서 준비 및 SIRIM 직원으로 구성된 인증패널에의 권고
- (2) 인증패널의 승인

사. 감시

- (1) 제품이 계속적으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시 및 재시험이다.
- (2) 제조공장 또는 시장에서 선정한 시료를 재시험한다.
- (3) 제품 또는 기술기준이 변경되었을 시 실시한다.

## 8. BTS(Batch Testing Scheme)



### 가. 신청

#### (1) 신청대상

말레이시아 내에 대리인이 있는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 / Consignment Scheme)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SIRIM의 라벨을 구입할 수 있다.

#### (2) 제출서류

- PP7: 탁송물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신청서

- PP8: SIRIM 안전라벨 신청서
- 에너지 위원회(ST)에서 발행한 COA 사본
- (가능시)형식시험보고서 사본
- 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청구서, 말레이시아 세관심사서류(K1 서식)
-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수수료

나.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산하)탁송물 서비스 센터

- (1) 모든 필요서류의 제출 확인
- (2) 신청서 기록
- (3) Job File 오픈 및 Job No. 부여
- (4) 탁송물 시험소로 Job File 송부

다. 전기전자시험부문의 탁송물 시험소

수입된 전기제품의 탁송물(Consignment) 시험 및 안전라벨에 대한 신청을 한다.

- (1) 기술위원(Technical Executive/TE)이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한다.
- (2) 긍정적인 결론이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부정적인 결론이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신청이 반려된다.
- (3) Inspector가 신청업체/제조업체의 하역창고에서 탁송물 검사를 실시한다.
- (4) 제출서류에 대조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 (5) 시험에 필요한 시료가 무작위 선정된다. 선정된 시료에 대해서 확인 라벨을 부착한다.
- (6) 올바른 시험시료를 받는다.
- (7) 시료를 시험한다.
- (8) 시험이 통과되면 기술위원은 안전라벨을 발행하도록 권고하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탁송물을 반려한다.

라. 탁송물 서비스 센터

- (1) 상급관리자 또는 지정된 사람이 통과된 탁송물을 확인하여 승인한다.
- (2) 신청자에게 위의 사실을 알리면 신청자는 라벨 비용을 지불한다. 그 후 신청자에게 안전라벨이 발행된다.
- (3) 라벨의 일련번호가 기록되고 PP8(안전라벨 신청서) 사본이 신청자에게 발송되고 안전라벨의 발행에 관련된 월간보고서가 에너지 위원회(ST)로 전송된다.

(4) 통과를 못한 탁송물도 에너지위원회로 보고된다.

마. 신청자(수입업체)

(1) 신청자는 PP8에서 명시된 것처럼 제품에 승인된 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다.

## 9. Letter of Release

규제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ST에 Letter of Release를 신청하여 수입품에 대한 세관통과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면 된다.

- 소요기간 : ST에 신청 후 1~2주 소요
- 유효기간 : 6개월로 만료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 10. 라벨 및 마크 표시사항

모든 규제품목은 전기규정(1994)의 “Regulation 98”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가. SIRIM 라벨



SIRIM 라벨은 인증 받은 전기제품의 주요 부분에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나. SIRIM 인증마크



SIRIM 인증마크는 램프홀더 등 장비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성질 때문에 라벨을 부착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SIRIM 라벨 라이선스 프로그램(인증 받은 제품인증라이선스)의 일부인 경우 등 SIRIM 라벨을 부착할 수 없는 전기제품에 사용된다.

#### 다. 시장감시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는 규제품목에 SIRIM 라벨 또는 인증마크가 적절하게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ST는 때때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사업장 및 판매업체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라. 부착장소

SIRIM 라벨 또는 SIRIM 인증마크는 규제대상 전기제품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재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 12. 행정처분

#### 가. 전기공급법(1990) 제37조제1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거나 다른 장비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각 행위에 대해서 RM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진다.

#### 나. 전기규정(1994) 제122조

동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RM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진다.

### 13. 유관기관

#### 가. 정부기관 : Suruhanjaya Tenaga

에너지위원회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부문을 규제하는 역할의 법정기구이다. 특히 전기공급산업 및 가스공급산업 등에 주로 관계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규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주요업무

전반적인 경제관련 규정 제정, 관세, 기술규정 및 안전규정 제정,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 제정 및 관리

(2) Contact

- 주소 : No. 12, Jalan Tun Hussein, Precinct 2, 62100, Putrajaya, Malaysia
- 전화 : 03-8870 8500(8604) / 팩스 : 03-8888 8637(8652)
- 웹사이트 : <http://www.st.gov.my/index.php>

나. 인증기관 :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는 SIRIM Berhad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1996년 설립되었다. 이후에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는 SIRIM Berhad가 이전에 수행했던 인증, 심사, 시험업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1) 주요업무

경영시스템 인증, 제품인증 및 심사, 시험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인증은 목재제품, 화재방지제품, 에코라벨링, EMC 인증제도 등이 있다. 제품시험은 전기전자제품,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제품,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화재방지제품, EMC 시험, 화학관련 제품 시험 등을 하고 있다.

(2) Contact

- 주소 : Block 25 SIRIM Complex 1, Persiaran Dato' Menteri, Shah Alam, 40911, Selangor Darul Ehsan
- 전화 : 6-03-5544 5171 / 팩스 : 6-03-55446466
- 웹사이트 : <http://www.sirim-qas.com.my>
- 담당자 : En Mohd Adly / Electrical Testing Section
- 이메일 : [adly@sirim.my](mailto:adly@sirim.my)

다. 기타 유관기관

(1) Standards Malaysia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산하기관

- 주소 : Century Square, Level 1 & 2, Block 2300, Jalan Usahawan, 63000 Cyberjaya, MALAYSIA
- 전화 : 603-8318 0002 / 팩스 : 603-8319 3131
- 웹사이트 :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index.php>
- 이메일 : [central@standardsmalaysia.gov.my](mailto:central@standardsmalaysia.gov.my)
- 주요업무 : 말레이시아 국가규격 개발

(2) Dagang Net Technologies Sdn Bhd : COA 온라인 신청 관련기관

- 주소 : Tower 3, Avenue 5, The Horizon, BangsarSouth, No. 8, JalanKerinch, 592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 1300 13 3133 / 팩스 : 03 27132990
- 웹사이트 : <http://epermit.dagangnet.com>
- 이메일 : [careline@dagangnet.com](mailto:careline@dagangnet.com)
- 주요업무 : 각종 정부관련 신청업무 온라인 대행, 교육·훈련서비스 등

14. 제품인증라이선스 예제

	No. Lesen : Licence No.:	PA039001
<b>LESEN PENSIJILAN BARANGAN</b> <i>Product Certification Licence</i>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dengan ini menganugerahkan kepada <i>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hereby grants to</i>	
	ABB STOTZ-KONTAKT GMBH DEPARTMENT STO/SG EPPELHEIMER STR. 82 69123 HEIDELBERG GERMANY	
	Lesen untuk menggunakan Tanda Pensijilan di atas barangan <i>a licence to use the Certification Mark on</i>	
	<b>MINIATURE CIRCUIT-BREAKERS (MCB'S)</b> Please refer to detail in the SCHEDULE	
	sebagai mematuhi keperluan <i>as complying with</i>	
	<b>MS IEC 60898 : 1998</b>	
	 Dato' Mariani Mohamad Pengarah Eksekutif Executive Director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Ir. Hj. Yahaya Ahmad Pengerusi Chairman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No. Syarikat 410334-X) 1, Persiaran Dato' Menteri Seksyen 5, Petai Surat 7035 40911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 60-3-5544 6400 Faks : 60-3-5510 9439 <a href="http://www.sirim-qas.com.my">http://www.sirim-qas.com.my</a> <a href="http://www.malaysiancertified.com.my">http://www.malaysiancertified.com.my</a>	Tarikh Mula Pensijilan : <b>28 November 2002</b> <i>Certified Since :</i>	Tarikh Dikeluarkan : <b>14 January 2008</b> <i>Issue Date :</i>
	Sah Sehingga : <b>28 November 2008</b> <i>Valid Until :</i>	No. Siri : <b>E 0340</b> <i>Serial No.:</i>
<small>Lesen ini dianugerahkan tertakluk kepada syarat-syarat Perjanjian Pensijilan Barangan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This Licence is grant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Certification Agreement of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small>		
		<small>PCB/CR/08 - 4.1 (E) Issue - 5 Rev. : 0</small>